

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

Korean National Police Agency



INFO

- 1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자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피해자보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'플케어'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. ※ 이용방법 : 앱스토어·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
- 3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에서 사건조회서비스(서면 동의 필요) 및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며, 우측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안내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

경제

경제적 지원

- 1 살인·강도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·오염되었나요?
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드립니다.
- 2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셨나요?
강력범죄, 성·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경우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3 범죄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요?
소정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또는 검찰(☎1577-2584)에 문의하시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사망·장애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별개로 구조금 지원 가능
※ 강력범죄로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·학자금·장례비 지원 가능

심리

심리적 지원

- 1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신가요?
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주민번호 유출로 범죄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☎044-205-6632~6649)
- 2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·불안 등 증상이 있으신가요?
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또는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 불법촬영물 삭제·차단을 원하시나요?
방송통신심의위원회(1377)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1366, 02-735-8994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삭제·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법률

법률적 지원

- 1 소송 관련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신가요?
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·변호 및 소송서류 작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가까운 지부 방문, 전화(132), 홈페이지(www.klac.or.kr)로 문의하세요.
- 2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나요?
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배상명령 :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(형사)
 - 지급명령 : 법원에서 실제 공판을 열지 않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(민사)
 - 소액심판 :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의 경우 신속하게 심판하는 제도(민사)

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

귀하의 담당수사관은 **소속관서 부서 계급 성명 수사관**입니다.
(전화 : **사무실전화번호**, 팩스 : **사무실FAX번호**)



범죄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경찰

경찰 단계

송치

- 1 조사 받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신가요?**
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.
- 2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시나요?**
살인·강도·강간 등 특정범죄 피해자는 조서를 포함한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하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3 편파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?**
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(국번없이 182)에 서면으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4 경찰수사 결과가 궁금하신가요?**
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, 전화·문자·우편 등 원하시는 통지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- 5 경찰의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**
 - **법원송치** :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
 - **검찰송치** : 경찰이 책임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
 - **불송치** :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
 - **수사중지** : 가해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
- 6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?**
사건 담당수사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이의신청 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.
- 7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?**
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건 담당수사관 소속 관서의 상급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급관서장은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수용·불수용 결정을 하고, 7일 이내에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해드립니다.

검찰

검찰 단계

기소

- 1 사건진행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?**
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찰 처분결과, 재판 진행 상황 결과, 구속·석방, **출소 여부에 대한 정보**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2 검찰의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**
 - **기소** :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
 - **불기소** : 검사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
 - **기소중지** : 소재불명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
 - **기소유예** :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의 경중 등 고려,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
-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?** 다음과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.
 - **항고** : 관할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(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)
 - **재정신청** :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이 기소해줄 것을 요구(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)

법원

재판 단계

- 1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?**
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정도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2 법원에 출석할 때 불안하신가요?**
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, 법정 사전 답사, 비공개 재판, 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3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신가요?**
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